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4 스타트업 콘텐츠 공모전 모집 공고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2024 스타트업 콘텐츠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5. 14.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공모개요

- 공모명: 2024 스타트업 콘텐츠 공모전
- 공모기간: 2024. 5. 14.(화) ~ 2024. 6. 7.(금)
- 지원내용

번호	구분	세부내용
1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만 19세 이상 일반인의 경우에만 공모전 참가 가능(2005. 01. 01. 이후 출생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전북 사업장 창업 필수
2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전 선정 우수 과제 2개(과제당 최대 1천만원)
3	모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ESG 콘텐츠 제작· E(환경: 환경 교육), S(사회: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등) G(지배구조: 윤리경영, 청렴문화)
3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자금 지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운영비, 용역비, 재료비 등)-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 컨설팅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연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4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콘텐츠로 타 공모전에 선정되었거나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작지원 불가- 우수과제 선정시 협약기간(협약일 ~ 2024. 10. 31.) 내 개발 완료

○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자격	지원대상	구분	지원자격																			
		세부기준	<table border="1"> <tr> <td>도내기업 (본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기업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td></tr> <tr> <td>예비창업자</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창업 필수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만 19세 이상)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td></tr> </table>	도내기업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기업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창업 필수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만 19세 이상)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도내기업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기업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창업 필수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만 19세 이상)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 선정 우수 과제 2개(과제당 최대 1천만원) 																					
모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ESG 콘텐츠 제작 · E(환경: 환경 교육), S(사회: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등) G(지배구조: 윤리경영, 청렴문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자금 지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운영비, 용역비, 재료비 등) - 희망자에 한해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예비창업자 및 사업자) - 컨설팅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연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p>※ 예비창업자의 경우 콘텐츠산업에 적합한 업태(종목)로 창업 필수</p>																					
	<table border="1"> <tr> <td colspan="4"><콘텐츠 산업분야></td> </tr> <tr> <td>캐릭터</td><td>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등</td><td>콘텐츠 솔루션</td><td>저작툴, 모바일솔루션, CG 등</td></tr> <tr> <td>만화</td><td>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td><td>지식 정보</td><td>e-러닝업, 애듀테인먼트 제작 등</td></tr> <tr> <td>애니 메이션</td><td>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td><td>영상</td><td>영상 기획 및 제작 등</td></tr> <tr> <td>실감 콘텐츠</td><td>MR/VR 홀로그래픽 등</td><td>공연</td><td>공연기획 및 연출 등</td></tr> </table>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등	콘텐츠 솔루션	저작툴, 모바일솔루션, CG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 정보	e-러닝업, 애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 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실감 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연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등	콘텐츠 솔루션	저작툴, 모바일솔루션, CG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 정보	e-러닝업, 애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 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실감 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연	공연기획 및 연출 등																			
<p>※ 상기 분야 이외의 경우 사전문의 후 신청(게임 및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p>																						
보증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동일 콘텐츠로 타 공모전에 선정되었거나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작지원 불가 - 기업 간 컨소시엄 불가(용역비로 편성 가능) - 우수과제 선정시 협약기간(협약일 ~ 2024. 10. 31.) 내 개발 완료 - IP(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계약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자격제한대상

<진흥원 지원 제한사항>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 당해년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1.5억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 향후 1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2년간 수혜받은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향후 2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사업안내서 서식 7 참조)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시기
사업공모/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모 및 이메일 신청접수·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5.14.(화) ~ 6.7.(금)
서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모집 수에 따라 심사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6. 18.(화)
선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심사- 선정기업 예산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정· 모집 수에 따라 심사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6. 25.(화)
선정과제 시상	- 선정과제 대상 사업화지원금 시상	6월 중
현장점검	- 선정기업 소재지 실태점검 등	6월 중
협약체결	- 과제협약 및 1차 지원금 교부(70%)	7. 1.(월)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수행 추진율 중간점검(현장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교부(30%)	9월 중
결과평가	-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 최종평가	11월 중
사업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실적보고서 및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11월 중

[용어설명]

- 지원금(사업화 지원금): 진흥원장이 주관기업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준용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수행기업(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과제신청 및 관리

- 본 사업의 사업관리·집행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됨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선정심사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지원금은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업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통장 잔고 '0원'인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 지원금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 분할지급(최초70%, 잔금30%)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업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이후 2년간 과제관리·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가 진행됨
- 지원금 집행 시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 함
- 지원금 집행 시 임직원과 가족간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불가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이중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는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 문구 삽입 권장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4. 5. 14.(화) ~ 6. 7.(금)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geh@jcon.or.kr)

- 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문의처

- 사업문의: 문화콘텐츠사업팀(063-282-9920, geh@jcon.or.kr)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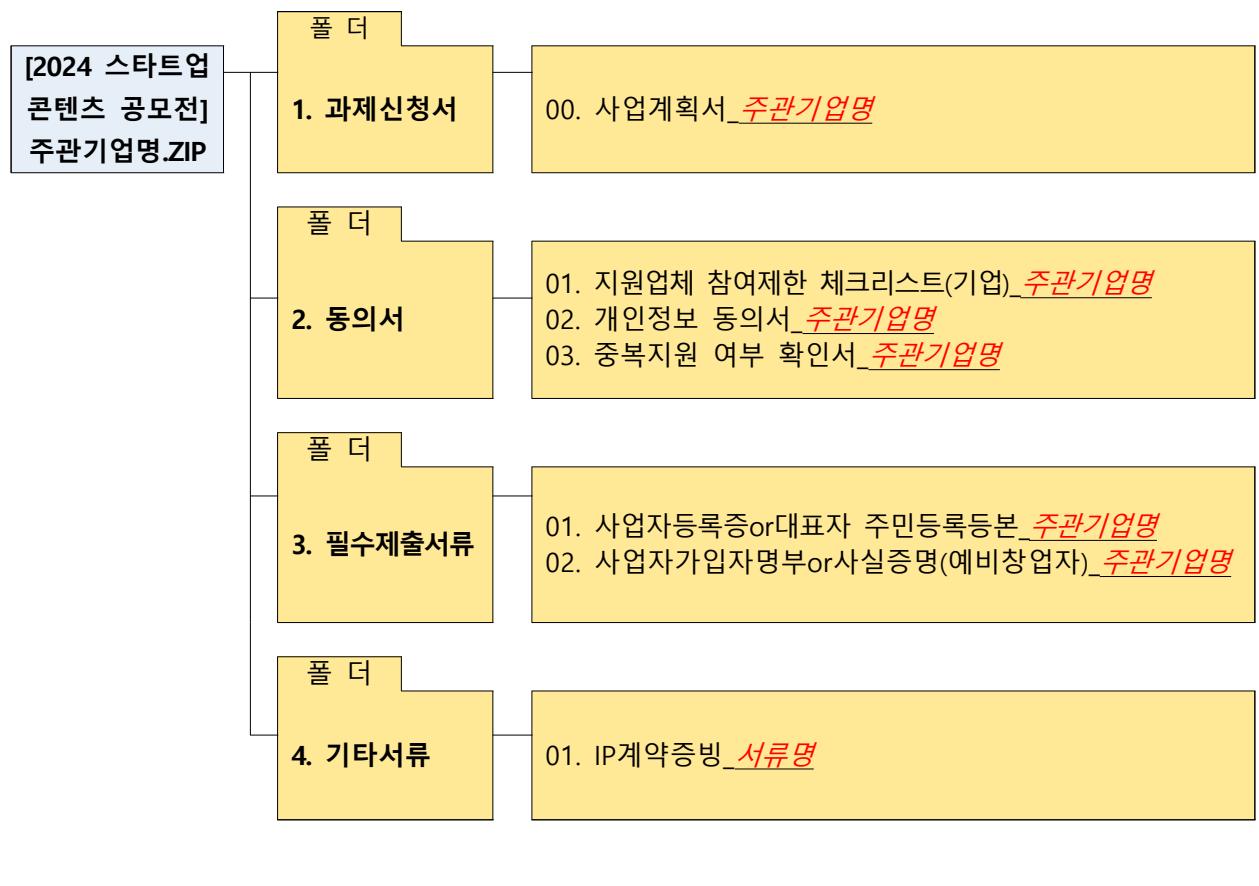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 방식
예비/기업 공통 서류	①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스캔 (PDF)
	②	참여인력 이력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예비	⑤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으로 선택 - 폐업경험이 있는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스캔 (PDF)
	⑥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기업	⑦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참조 	
	⑧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기타 서류	-	기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심사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됨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방법

-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수정이 불가
- 압축파일명: [2024 스타트업 콘텐츠 공모전]_주관기업명.ZIP
- 압축풀더트리



5

심사안내

- 심사기준(안) ※ 심사지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적합성 검토

구분	검토사항	평가
① 제재사항	- 진흥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별표 참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② 구비서류	- 과제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③ 중복지원	-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심사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지표	배점
기획 우수성 (30)	목적 적합성	- 지원분야별 기획된 과제가 공모주제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30
	기획 완성도	-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과제 내용 (20)	창의성	- 제안내용의 참신성(차별성, 독창성, 혁신성 등)	20
	경쟁력	- 유사 콘텐츠분야에서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수행능력 (20)	수행관리체계	- 사업 기획에 대한 추진전략 및 일정의 체계성	20
	참여인력	- 참여인력 참여율 및 전문성(유사과제 수행능력 등)	
기대효과 (20)	발전가능성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2차 콘텐츠 발전 가능성	20
	지역활성화	- 과제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관광활성화 등) 연관 여부	
사업비 (10)	구성 적정성	- 실제 소요 사업비 집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10
	조달계획	- 자부담금 및 투자 유치등 사업비 조달계획의 구체성	
합 계			100

- 신청과제 수가 모집규모의 3배 이내일 경우, 서류심사 없이 적합성 검토 후 선정심사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점수순위에 따라 모집규모의 3배수를 2차 선정심사 대상으로 선정
- 선정심사 발표자료의 경우 서면심사 후 별도통보

※ 발표심사 발표자는 주관기업 대표자에 한함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종합하여,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합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를 의도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종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터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종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을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증가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절산에 불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 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불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상기 8호·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청하는 모든 성격의 지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